

2017. 10. 3. 결정
사이타마 지방재판소 민사제3부
2017년(요) 제2000호

#계정 삭제
#인격권
#방해배제청구권
#표현자유

2017년 10월 3일 결정

**사이타마 지방재판소 민사제3부 2017년(요) 제2000호
투고기사 삭제 가처분 명령 신청 사건**

당사자 : 별지 당사자 목록에 기재한 바와 같이

주문

채무자는 별지투고기사목록에 기재된 투고 기사를 임시로 삭제하라.

이유의 요지

별지 이유의 요지에 기재한 바와 같이

재판장 재판관 小林久起

재판관 工藤正

재판관 齋藤千紘

별지 1 당사자 목록

채권자 A

채권자 대리인 변호사 田中一哉

채무자 Twitter, Inc.

상기 대표자 최고경영책임자 잭 도시(Jack Dorsey)

채무자 대리인 변호사 中島徹 平津慎副 大澤大

별지 2 투고 기사 목록

- 1) 열람용 URL <생략>(어카운트 전체)
- 2) 열람용 URL <생략>
투고일시 2017년 5월 14일 8:19
투고내용<생략>
A=B
너무 충격적이다
- 3) 열람용 URL <생략>
투고일시 : 2017년 4월 1일 14:25
투고내용 : A씨는 전 AV여배우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ㅋ
- 4) 열람용 URL <생략>
투고일시 : 2017년 3월 20일 15:43
게시내용 : A너무 귀여워.
B라는 전 AV여배우 같아서 요즘 그 동영상 자주봐ㅋㅋ
- 5) 열람용 URL <생략>
투고일시 : 2011년 11월 19일 15:17
투고내용 : A씨도 YouTube에서 [생략] 여러가지 말했지만, 결국은 B가 AV 여배우였잖아? ^^ ; 수상쩍은 소리만 늘어놓네
- 6) 열람용 URL <생략>
투고일시 : 2017년 6월 5일 23:38
투고내용 :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AV의 사진을 올리다니 꽤 원한을 샀구나.
A씨. <생략>...을 가지고도 리벤지 포르노는 막을 수 없는지...
- 7) 열람용 URL <생략>
투고일시 : 2017년 6월 6일 9:54
투고내용 : 놀랐어. 며칠 전에 D에 관한 트윗에 좋아요!를 받아서 그 어카운트를 들여다봤더니 AV여배우의 태그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략》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인 것 같다. A=B[AV여배우]라는 소문이 있지. 이라기 보다는 본인이네.

별지 3 이유의 요지

(1) 본건 투고기사 2에 대하여

채무자는 본건 투고기사 2는 「A=B」라고 말할 뿐이기 때문에, 기타 투고 기사와 달리 채권자가 전 AV 여배우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또 「B」가 전 AV 여배우라는 것은 일반 독자에게 알려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하면, 「A=B」라는 기재만으로는 채권자가 전 AV 여배우라고 읽어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본건 투고 기사2는 채권자가 전 AV 여배우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는, 젊은 신진기업가로서 그 활동이 매스미디어나 국립대학의 강의에서도 다루어지며 인터넷상에서도 이름과 함께 활동이 소개되는 저명인사가 되어 있다. 채권자와 같은 인터넷상에서 널리 알려진 저명인에 대해서, 'B'라는 다른 이름과 등호 '='로 연결되어 트위터 상에 표시되고, 그것을 채권자의 사회적 활동을 아는 독자가 읽으면, 채권자가 'B'라는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는 저명인과 동일 인물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저명인의 이름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은 널리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인터넷상에서 「B」라고 하는 이름을 검색하면, 그것이 전 AV여배우의 이름인 것을 용이하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널리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저명인인 채권자에 대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전 AV여배우의 이름과 등호로 연결되어 「A=B」라고 트위터상에 표현되면 이를 읽는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전 AV 여배우라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 본건 계정의 삭제 청구에 대해

채권자는 본건 어카운트에 투고된 개별 투고기사 및 기타 개별 콘텐츠(예를 들어, 헤더 화상 및 프로필의 기재 등)의 삭제가 아니라, 본건 어카운트 전체의 삭제를 요구한다.

이 점에 대해 채무자는 채권자는 스스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정보의 구체적 내용 및 구체적 범위를 밝힌 후에 해당 정보만의 삭제를 요구해야지, 만연히 본건 계정 전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서 채무자는 본건 어카운트 전체를 삭제하게 되면 채권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정보뿐 아니라, 그 외의 정보도 포함해 모든 정보가 삭제되게 되지만, 채권자는 인격권

침해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삭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삭제의 대상은 채권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정보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정보에 대해 삭제를 인정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일절 없고, 또한 본건 어카운트 전체를 삭제하게 되면, 본건 어카운트의 보유자는 향후 본건 어카운트를 사용하여 기사를 일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전체 어카운트를 삭제하는 것은 장래의 표현행위에 대해서 그 표현내용을 묻지 않고 포괄적 망라적으로 사전금지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및 표현행위에 대한 위축효과의 중대성 관점에서 표현행위에 대한 금지의 가부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고, 만약 금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범위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 어카운트는, 그 어카운트 전체가 별지 <생략>과 같은 내용으로, 어카운트명에 「<생략>이라고 표기하고, 저명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채권자와 전 AV 여배우로서 인터넷상에서는 널리 알려진 B의 이름을 병기하고, 이 양자를 관련성 있는 이름으로 연결시키고 있으며 또한, 프로필 란에는, 「<생략>그렇게 말하는 것은, <생략> A씨. '생략」이라는 다른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권자의 코멘트를 그대로 게재한 다음, 주소란에 채권자의 주소지('생략')를 기재하고, 블로그의 도메인명 란에도 채권자 블로그의 도메인('생략')을 기재하고 있다. 또한 헤더 화상에는, 채권자의 이름의 표기와 사진으로 채권자를 소개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고 있다. 그리고, 투고 내용은, 12개의 트윗을 게재하고 있지만, 최초의 트윗에 채권자가 블로그에 게재한 사진을 그대로 게재한 다음, 그 후의 11개의 트윗은, 모두 전 AV 여배우 「B」의 AV 화상을 전제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건 어카운트는 어카운트명, 프로필 란의 기재, 헤더 화상 및 투고 기사 모두에서, 채권자가 본건 어카운트를 개설한 것처럼 가장해 위장한 후, 열람자에 대해 채권자가 전 AV 여배우이며, 투고한 화상의 성인 비디오에 출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동시에 채권자가 그러한 화상을 투고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되어 표현된 것이라 인정된다.

이와 같이 외형적으로도 본건 어카운트는 어카운트 전체가 어느 구성부분을 취해도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를 행하는 내용의 표현이다.

이러한 어카운트 전체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며 이로 인해 중대한 권리침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권리구제를 위해 어카운트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어카운트 전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불법행위만을 목적으로 타인을 위장한 계정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본 건 계정의 보유자로서는 따로 정당한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는 것에 아무런 방해를 받을 수 없다.